

##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 집 자

(대통령령 제14276호)

### 기술개발 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수출계약의 범위) ①법 제2조제6호에서 “기타기술”이라 함은 기술용역(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제외한다)과 기술비법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이라 함은 기술수출계약기간중 그 기술수출의 대가가 미합중국통화 10만달러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0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기술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대상) 법 제3조에서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2. 정보처리 및 컴퓨터응용관련업
3.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물자의 가공·조립·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4. 금융·보험업(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을 말한다)
5. 전기통신업
6. 연구 및 개발업
7. 무역업

제4조(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의 적립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3(조세감면규

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준비금의 사용)** ①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개발기술의 활용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
3.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에의 출자
4.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전기통신업의 육성
5. 상표 및 디자인 개발
6.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
7.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육성

②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준비금의 사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적립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6조(국산신기술제품의 신고)**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분야의 국산신기술제품의 신고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산신기술제품의 명칭
2. 국산신기술제품의 내용
3. 기술개발기관 및 기술개발책임자

4. 기술개발기간 및 투자실적
5. 지원요청의 내용
6. 기업화현황 및 투자계획
7. 생산공정
8.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원료조달계획
9. 국내의 시장성에 대한 전망
10. 관련산업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제7조(국산신기술제품의 심사 및 지원여부 결정)** ①과학기술처장관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국산신기술제품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개발내용 및 기술수준
2. 생산공정 및 그 기술의 고도성
3. 동종 또는 유사제품과의 비교
4.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생산계획
5. 국내의 시장에서 본 생산계획 및 기업성
6.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7. 지원의 필요성

②주무부장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의견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항별 의견 및 종합적 의견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종합하여 국산신기술제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국산신기술제품의 지원요청)**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법 제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

청을 받은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주무부장은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또는 공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발전기금
4.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국민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의 기술개발자금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7. 특허법 제27조 및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외국출원시의 보조금
8. 기타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제10조(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주무부장은 국산신기술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기타 공공단체

제11조(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등 지원) ①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주무부장은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의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②과학기술처장관 또는 주무부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4.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제12조(국산신기술제품의 지원기간)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국산신기술제품의 지원결정일부터 1년이상 5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주무부장이 정

한다.

**제13조(국산신기술제품 지원조치의 취소)** 주무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을 받는 자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건설 또는 제품생산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의 성능·품질보장에 필요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산신기술제품의 지원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미리 과학기술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업부설연구소의 기준등)** ①법 제8조의3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고 함은 다음 구분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고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연구전담요원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이상
3.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3인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기업 ②부설연구소	10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의 여부를 불문한다.

④법 제8조의3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⑤법 제8조의3제1항제8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15조(특정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등)**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①법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기관중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 및 그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제1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8조의3제2항 및 법 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

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출연금등의 관리)**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등을 지급 받은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재료구입비
4.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 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 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 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 개발보전비
9.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

관청의 의견서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에 의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생산·원가절감·품질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징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징수된 기술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연구능력제고
2. 연구개발
3. 기초연구를 위한 한국과학재단기금조성
4.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6.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항목

⑤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제3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를 제4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 및 촉진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이내의 기간동안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금등을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기한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기술료의 징수결과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기한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징수된 기술료를 제5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20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등) ①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기타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8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국내개발기술의 고시) 과학기술처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산업재산권등의 양여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번호·제목 및 내용
  2. 사용목적
  3. 산업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을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 사용의 목적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이나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의 양여는 주무부장관과 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 사이의 양여계약에 의한다.

④주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은 산업재산권이나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을 무상으로 양여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서의 사본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수출계획의 신고등)** ①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수출계획을 신고하거나 법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기술수출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그 기술수출계획이 방위산업분야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이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수출계획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수출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략기술수출에의 해당 여부
2. 기술수출이 국내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 ③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전략기술수출의 승인등)** ①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기술수출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양여, 산업재산권의 실시료의 면제 또는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의 양여를 받은자는 면제 또는 양여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산업재산권 또는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의 당해 연도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수출계획을 신고한자는 당해 연도 기술수출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청문)** ①주무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출계획의 신고의 수리 및 그 사후관리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과 그 사후관리
3.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과 그 사후관리
4.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의 수리 및 그 사후관리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

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학기술처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11·제137조의3 및 제194조의10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5조제2항관련)**

구 분	사 용 기 준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	<p>가. 자체기술개발</p> <p>총리령에서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다음의 비용</p> <p>(1)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p> <p>(2)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시험연구비</p> <p>(3)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p>

구 분	사 용 기 준
2. 기술정보	<p>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p> <p>(1)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p> <p>(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p> <p>(나) 국·공립연구기관</p> <p>(다) 정부출연연구기관</p> <p>(라)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p> <p>(마) 국내의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p> <p>(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p> <p>(사)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p> <p>(2)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이상)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p>
	<p>가. 국내의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음에 따른 비용</p> <p>나.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p> <p>다.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p> <p>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움을 포함한다) 참석비</p> <p>마.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p>

구 분	사 용 기 준
3. 기술훈련	바.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가. 자체훈련 또는 국내외 위탁훈련비 나.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다.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4. 연구시설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5. 중소기업 기술지도	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 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6. 연구기관의 육성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나.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7. 개발기술의 활용	가. 국내외 산업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로 지급되는 경비

구 분	사 용 기 준
8. 산업기술 연구조합의 육성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 연구조합에 납부하는 회비·연구개발분담금등 부과금
9.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 응용관련업 또는 전기통신업의 육성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전기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한 비용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12.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

[별표 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제3항관련)

구분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11조의 규정(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호	20만원
2	법 제11조의 규정(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호	60만원

구분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3	법 제11조의 규정(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의한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20만원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이유

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1994. 1. 5 법률 제4711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의 완화등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사업의 범

위에 전기통신업과 연구 및 개발업등을 추가 함(령 제3조).

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격기준을 완화함.(령 제14조제3항).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기준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14조제5항).

라. 주무부 장관이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조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당분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령 제26조).

〈법제처 제공〉

## 공 지 사 항

### 회사동정 및 신제품소개 무료게재 안내

월간 『전기와안전』에서는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회사동정 및 신제품소개를 다음과 같이 무료로 게재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회사동정 : 200자 원고지 5매이내 또는 보도자료
2. 신제품소개 : 200자 원고지 5매이내(제품 사진포함) 또는 보도자료
3. 제 출 처 :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9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연구개발부

전화 : (02)579-3291~5 팩스 : (02)578-3640

4. 원 고 마 감 : 매월 20일까지